

無給勞動의 經濟的 價値推計

권태희*

가계의 비시장생산에 해당하는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추계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1990년대 들어 UN의 '신국민계정' 권고안에서 국민계정의 가계부문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무급노동의 화폐추계액을 측정하여, 위성계정으로 개발하는 단계로 연구가 진전되면서 적절한 추계방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추계방법에 의해 추계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시간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체 여성의 생산적인 무급노동의 가치(예컨대, 음식준비, 청소, 가정관리, 아이보살피기, 부모보살피기 및 자원봉사활동 등)를 추계하고자 한다. 활용될 무급노동의 추계방법은 개별기능대체비용법, 종합대체비용법, 총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 및 통합비용법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20세 이상 전체 여성의 총무급노동가치는 연간 124조 원으로 1999년 경상GDP 대비 약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1인당 연간 무급노동가치는 833만 원, 월무급노동가치는 69만 4,000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경제에서 전체 여성들의 무급노동가치(또는 가계생산)의 주요 구성요소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선진국의 무급노동가치와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여성의 국민경제기여도를 재검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무급노동가치, 가계생산, 통합비용법, GDP기여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0, J2, J3

I. 서 론

인간의 일상생활은 시장경제활동에 의해 유급노동으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와 취사, 세탁 및 가족보살피기 등과 같은 가사노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가계구성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BK21 Post Doctor, 주소: 서울 중로구 명륜동 3가 53, 전화: (016) 342-1999, 팩스: (02) 744-5717, E-mail: tehikwon@hanmail.net

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代價를 요구하지 않는 무급노동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무급노동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재생산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경제통계에서 충분히 파악되지 않음으로써 과소추계되어 왔다.

1966년 이후 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인구라는 개념이 채택되면서 그 동안 한 국가의 國民所得과 國富는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제활동인력과 자본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추계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은 생산주체인 기업에서 유출된 부가가치가 소비주체인 가계와 혼합경제주체인 정부로 유입된다는 기존의 정형화된 메커니즘에 의하여 국민경제활동을 이해하고 있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은 국민경제의 순환적인 흐름과 부의 창출, 경제주체의 성격과 경제활동인력의 범주를 규정하는 데서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 한계성의 핵심은 가계를 소비주체로서만 인식해 온 고정관념에서 기인되었으며, 가계(household)에 의해 창출된 여성의 무급노동을 생산요소의 基本因子로서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민계정체계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 전체를 기록하고, GNP 또는 GDP로 그 구체적인 수량을 측정해 왔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생산적인 무급노동을 국민계정체계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전체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3년 UN의 '國民計定體系(SNA)' 권고안에서는 국민계정의 가계부분에 대한 보조지표로서 무급노동의 화폐추계액을 측정하여 시장경제활동과 비교가능한 형태로 GDP와 비교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계생산에 대한 위성계정을 개발하는 단계로 진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여성의 무급노동가치에 관한 데이터는 무급노동과 연관된 시장유급노동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의 再建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1999),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자료(1999)를 주요한 통계기반으로 하여 20세 이상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연령별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추계를 하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무급노동가치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분석으로 발전된다면 향후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경제적 가치추계와 공정한 사회·경제적 보상 및 남녀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

인을 제공할 수 있겠다. 동시에 가계생산의 위성계정개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정보제공과 무급노동부문과 시장노동부문의 효율적인 정부정책 수립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

분석의 초점은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이전 연구의 문제점으로 중분류·대분류 평균임금 사용과 연령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가치추계에서 무급노동의 임금적합도가 상당히 낮았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개선하여 추계치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연령별 실제 전체 여성인구를 가치추계과정에 투영하여 보다 신뢰할 만한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는 데에서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는 데 있다.

연구구성체계는 제Ⅱ절에서 무급노동시간의 특성을 인적 특성별·연령별로 고찰하고, 제Ⅲ절에서는 무급노동가치의 추계를 위한 추계방법 개관과 추계방정식 설정 및 추계결과를 종합적으로 최근 국내·외 주요 연구와 비교·분석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낸다. 다음으로, 무급노동가치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無給勞動時間의 特性

Reid의 제3자 기준에 의해 생산적인 무급노동을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으로 분류하여 시간사용의 특성을 살펴보자. 전체 여성을 인적 특성별로 전업주부, 취업주부로 구분하여 전체 남성의 무급노동시간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총무급노동시간 중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이 6.52시간으로 가장 길었는데, 취업주부 3.49시간 보다 약 0.8배, 전체 여성 4.18시간보다는 0.6배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노동시간의 성별 비교는 전체 남성이 0.42시간으로 전체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5.1배나 짧았다. 활동유형별 무급노동시간의 편차크기는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활동별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음식준비(4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51), 청소 및 정리(43), 의류관리(42)로 전통적인 무급가사노동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취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 사용은 음식준비, 청소 및 정리, 의류관리,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순으로 전업주부의 무급노동시간 배분과 순서가 유사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미취학아이 보살피기활동에 적은 무급노동시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

〈표 1〉 인적 특성에 의한 1일 평균무급노동시간

(단위: 시간, 분)

생활시간조사 활동별(중분류)	인적 특성별			전체 남성
	전체 여성	전업주부	취업주부	
4 가정관리	3.21	4.59	3.08	0.27
41 음식준비 및 정리	1.41	2.27	1.43	0.05
42 의류관리	0.29	0.42	0.25	0.00
43 청소 및 정리	0.38	0.54	0.34	0.07
44 집관리	0.04	0.05	0.03	0.05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0.15	0.26	0.12	0.03
46 가정경영	0.03	0.05	0.02	0.01
49(84) 기타 관련이동	0.12	0.20	0.10	0.04
5 가족보살피기	0.53	1.49	0.38	0.12
5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0.32	1.11	0.18	0.06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0.10	0.17	0.12	0.01
53(85)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보살피기	0.11	0.20	0.09	0.05
무급가사노동	4.14	6.48	3.46	0.39
6 참여 및 봉사활동	0.04	0.04	0.03	0.03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	0.02	0.02	0.02	0.02
64(86) 참여 및 자원봉사 관련이동	0.02	0.02	0.00	0.01
무급노동	4.18	6.52	3.49	0.42

다. 그 이유는 미취학아이가 있는 취업주부들은 제2차적인 위탁시설에 보육을 맡기기 때문이며, 취업주부의 대다수가 미취학아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계 내에서의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에 소요된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여성의 연령계층별 무급노동시간의 특성은 전체 평균무급노동시간과 비교해 볼 때 〈표 2〉에서와 같이 30대가 전체 평균 4시간 18분보다 1시간 15분 긴 5시간 33분으로 전연령계층 중에서 가장 길었으며, 40대, 50대는 4시간 29분으로 동일한 무급노동시간 참여를 나타내며, 두 연령계층에서는 평균보다 11분씩 길었다. 반면, 60대 이상과 20대 여성들은 평균무급노동시간보다도 40분, 1시간 8분씩 짧은 3시간 38분, 3시간 10분으로 무급노동시간에 대한 참여가 급

〈표 2〉 전체 여성의 활동유형별·연령별 무급노동시간

(단위: 시간, 분)

활동유형		연령계층별					
중분류	소분류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4 가정관리		3.21	2.03	3.49	3.57	3.55	3.09
41 음식준비 및 정리	411, 412	1.28	0.49	1.41	1.49	1.44	1.22
	413	0.13	0.05	0.13	0.16	0.19	0.18
42 의류관리	421	0.19	0.12	0.21	0.22	0.24	0.19
	422	0.05	0.03	0.05	0.05	0.05	0.06
	423, 424	0.03	0.02	0.03	0.04	0.03	0.02
	425	0.02	0.02	0.02	0.02	0.01	0.01
43 청소 및 정리	431	0.08	0.06	0.09	0.08	0.07	0.08
	432, 433	0.30	0.19	0.34	0.34	0.34	0.30
44 집관리	441	0.01	0.00	0.01	0.01	0.02	0.01
	442, 443	0.03	0.01	0.02	0.03	0.04	0.05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451, 452	0.15	0.12	0.19	0.17	0.17	0.09
	453	0.00	0.00	0.01	0.01	0.00	0.00
46 가정경영	461	0.01	0.01	0.02	0.01	0.01	0.00
	462	0.00	0.00	0.00	0.00	0.00	0.00
	463	0.02	0.02	0.02	0.02	0.02	0.01
49 기타 84 가정관리 관련이동	499, 841	0.12	0.09	0.15	0.14	0.14	0.09
5 가족보살피기		0.53	1.05	1.40	0.28	0.29	0.24
5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511, 512 519	0.32	0.54	0.57	0.04	0.16	0.13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21, 522, 523, 529	0.10	0.02	0.29	0.12	0.01	0.02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 그 밖의 가족보살피기 85 가족보살피기 관련이동	530, 540, 550, 851	0.11	0.09	0.15	0.11	0.12	0.08
무급가사노동		4.14	3.08	5.30	4.25	4.24	3.33
6 참여 및 봉사활동		0.04	0.01	0.03	0.04	0.05	0.05
61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돕기	610	0.02	0.01	0.02	0.02	0.03	0.04
64 자원봉사	641	0.00	0.00	0.00	0.01	0.00	0.00
	642	0.00	0.00	0.01	0.00	0.00	0.00
	643	0.01	0.00	0.00	0.01	0.01	0.01
86 참여 및 봉사 관련이동	644, 649, 861	0.01	0.00	0.01	0.01	0.01	0.01
무급노동		4.18	3.10	5.33	4.29	4.29	3.38

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활동별·연령별로는 음식준비에 40대, 50대순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 20대순으로 가장 짧았는데, 20대와 40대의 시간사용편차는 약 2배나 되었다. 나머지 가정관리에 속하는 활동들은 연령별 편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고, 가정관리관련 물품구입활동의 경우 조금 두드러졌는데, 30대 연령계층이 40대, 50대 연령계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족보살피기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30대가 1시간 40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20대는 1시간 5분 동안 참여하였으며, 20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50대에 들어서면 가족보살피기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29분으로 50%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후 40대, 60대 이상은 각각 28분, 24분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그 중에서도 30대는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활동에 주로 사용시간의 비중이 높았고, 20대의 사용시간은 상대적으로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에 집중되었다. 나머지 연령계층인 40대는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와 기타 가족보살피기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고, 50대, 60대 이상은 40대의 가족보살피기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적 특성과는 다르게 오히려 미취학아이 보살피기와 기타 가족보살피기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50대 이후 전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출가한 취업자녀의 아이들을 자녀의 직접노동을 대체해서 간접적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반면, 참여 및 봉사활동은 연령계층별 편차는 작았지만, 5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다른 연령계층보다 다소 높았다.

여성들이 시장에서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시간과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1일 생산노동에 투입하는 시간량과 시간사용의 특성을 대비하여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우리 나라 20세 이상 전체 여성과 아울러 전체 남성은 평균적으로 생산적인 노동에 1일 7시간 24분을 투입하는데, 이 중에서 4시간 54분은 시장에서의 유급노동을, 2시간 30분은 가게 내에서 무급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여성은 1일 총 7.53시간 중 3시간 35분을 유급노동에, 4시간 18분을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반면, 남성은 1일 총 6.56시간 중 6시간 14분을 유급노동에, 42분을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가게에서의 무급노동에 대한 시간배분비율이 비등하였으나, 남성들은 약 90%를 시장유급노동에, 나머지 10%를 가게무급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무급노동에 대한 현격한 시간배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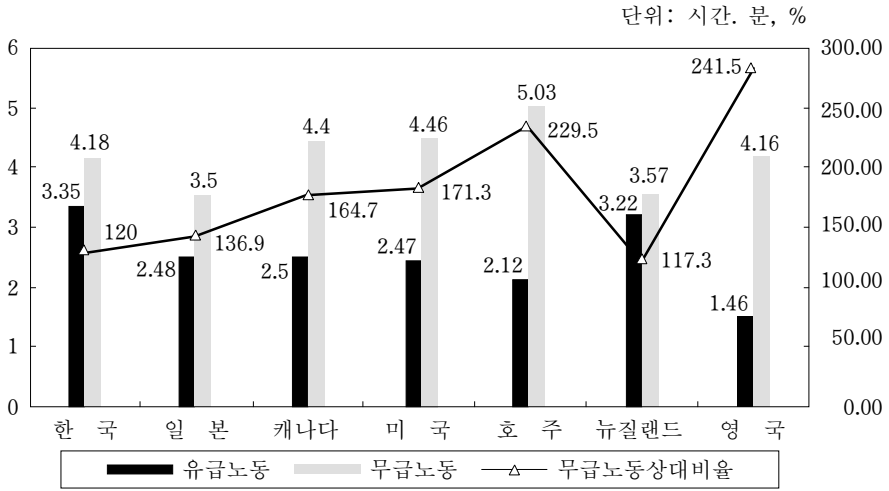
일본(1996년 기준)과 비교하면 15세 이상 전체 여성들은 전체 생산적인 노동 6시간 38분 중 유급노동 2시간 48분에 비해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3시간 50분으로 1시간 2분 더 길었으며, 우리 나라 20세 이상 전체 여성이 총생산적인 노동시간에서는 평균 1.15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 일본 여성에 비해 유급노동(0.47시간)이나 무급노동(0.28시간)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남성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일본 15세 이상 전체 남성은 총 6.07시간 중 유급노동 5시간 36분, 무급노동 31분에 비해, 한국 전체 남성(총 6.56시간)이 유급노동 38분, 무급노동 11분으로 각각 참여하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차는 전체 여성의 한·일 간 편차크기보다 전체 남성의 한·일 간 편차크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진 주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여성무급노동의 상대비율(무급노동/유급노동 \times 100)개념으로 비교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에 비해 1.2배 길었으며, 일본 여성 1.4배, 캐나다 여성(1999년, 16세 이상 인구) 1.6배, 미국 여성(1997년, 15세 이상 인구) 1.7배, 호주 여성(1997년, 15세 이상 인구) 2.3배, 영국 여성(1999년, 16세 이상 인구) 2.4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뉴질랜드 여성(1999년, 16세 이상 인구)은 무급노동상대비율이 1.2배로 우리 나라와 유사한 무급노동과 유급노동 시간 사용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준은 주요 선진국의 전체 여성 무급노동 평균시간 차이에 대해 제한된 설명력을 갖지만, 사실상 무급노동의 범주, 비교연도 및 대상인구의 차이에 따라 무급노동의 상대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 점을 반영한 <그림 1>의 유·무급노동 국제비교에서는 우리 나라 여성의 무급노동시간 참여는 캐나다 4시간 40분, 미국 4시간 46분, 호주 5시간 3분에 비해서는 다소 짧았으나, 일본 3시간 50분, 뉴질랜드 3시간 57분, 영국의 4시간 16분보다는 긴 것으로 설명된다.

III. 韓國女性 無給勞動價値의 推計

본 연구에서는 자료부족에서 오는 연구방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투입물접근법에만 기초로 하여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추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한 투입물접근법에 의한 추계방



자료: 각국의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인용함.

〈그림 1〉 여성 유급·무급노동의 국제비교

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급노동의 범주에 대한 정의, 무급노동에 참여한 시간량, 대응되는 직종의 적합한 임금률, 해당 인구수의 정의이다. 무급노동의 정의는 제3자 기준원칙¹⁾에 의해 생산적인 노동으로 분류하는데, 해당되는 활동범주를 통계청의 활동분류표상에서 주요 가사활동인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를 무급가사노동(unpaid household work)이라 하고, 이에 ‘참여 및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무급노동²⁾이라고 한다. 대체되는 직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선정하며 대응직종임금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한 원자료를 기반으로 각 방법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산출하며, 인구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의한 여성인구수를 활용하여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한다.

1. 推計方法의 概觀 및 推計方程式

(1) 市場代替費用法

1) 個別機能代替費用法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여성의 무급노동을 각 활동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무

1) “This criterion implies a production boundary containing non-market activities that in principle could be replaced by market goods and services,” Joke Swiebel(1999)에서 인용함.

2) 무급노동에는 무급노동활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시킨다.

급노동활동에 사용된 시간을 측정한 후, 대체직종의 시장임금률을 적용시켜 총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급노동을 각각의 활동유형별로 분류하는 것과 동시에 그 활동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전문직업인(또는 개별기능별 전문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울러 무급노동을 활동별로 세분화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추계해야 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의 임금률도 산출해야 한다. 단, 무급노동의 가치를 업무수행자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단지 무급노동량에 해당하는 시장대체자의 서비스의 가치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Hefferan(1982)에 의하면,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의 업무능력이 전문가만큼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무급노동가치가 과대추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전문직업인 임금률 적용에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 여성근로자 임금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동일대상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경력·근속연수·학력에 따라서 실제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업영역분류 및 대체직업과 적용임금률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추계방정식으로 나타내면, 개별기능대체비용법(individual function replacement cost method: IFR)은 무급노동범주에 속하는 각각의 활동을 기능별로 분류한 후, 각 기능에 해당되는 임금을 연령별로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요구되는 데이터는 개별기능별로 소요되는 시간, 이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의 임금, 연령별 무급노동에 참여한 여성수이다.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WK_{IFR} = \sum_{j=1}^N \sum_{i=1}^M H_{ij} PK_j W_{ij}$$

여기서, UWK_{IFR} : 한국 무급노동에 대한 개별기능대체비용 추정치

H_{ij} : i 기능의 j 여성(연령별 데모그래픽)의 무급노동시간

PK_j : 연령별로 무급노동에 참여한 여성의 수

W_{ij} : i 기능의 j 여성(연령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평균임금

특히 본 추계방법은 여성의 무급노동을 활동·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³⁾와 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를 직종별·연령별 임금자료로 우선 분류하여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 추계에 앞서 통계청의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분류상의 무급노동활동과 유사한 기능을 수

3) 『한국표준직업분류』는 2000년에 신규 개정되었으므로 자료추계기간의 직업분류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이전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행하는 직업을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찾아 대응직업을 매치(match)하고, 그 대응직종의 평균임금을 추계하면 <표 3>과 같다. 전체 52개 활동 중 생산적인 활동에 속하는 여성의 무급노동을 24개 유사활동유형별로 분류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응직종 소분류 임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표 3>의 직종 소분류에 의하면, 적용직종이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같은 활동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가사 및 관련근로자(시간사용코드 411-412, 422, 431, 451-452, 499-841), 초등교육교사(시간사용코드 511-512, 519, 521-523, 529, 642) 항목이 해당된다. 또한 무급노동활동유형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대응직종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시간사용코드 610, 641, 644, 649, 861) 정확한 대응직종 매치임금의 부재라는 한계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무급노동 가치추계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조사의 무급노동활동에 상응하는 소분류 임금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의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총가치추계에 앞서 전체 여성 무급노동의 활동유형별·연령별 시간당 평균임금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전체 가정관리 활동에 대한 평균임금은 50대 5,746원, 20대 5,515원, 40대 5,357원, 30대 5,202원, 60대 이상 4,259원의 순으로 기초무급가사노동(식사준비, 세탁, 집안청소 등)에 대한 평균임금이 대체로 낮았으며, 이 밖에 내구재 구매관련 행동, 가정계획, 가계부정리 같은 부차적인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가족보살피기 활동에 대한 연령별 평균임금은 40대 9,392원, 50대 9,332원, 참여 및 봉사활동은 40대 5,868원, 60대 이상이 5,859원으로 수위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무급노동에 참여한 전체 여성의 인구수는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서의 기본변수로서 연령별 무급노동 참여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2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가사·육아’에 종사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연령별로 합하여 실제 여성인구수를 적용하였다. 이 중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통학, 연로, 기타’항목은 비생산적인 노동활동으로 보고, 본 연구분석대상인 전체 여성인구수에서 제외시켰다. 전체 여성인구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표 5>과 같이 전체 1,490만 4,000명 중 30대 인구가 320만 7,000명으로 전체 대비 약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0대 22.2%, 20대 21.5%, 60대 이상 15.0%, 50대는 219만 6,000명으로 30대 인구의 약 1/2에 불

〈표 3〉 전체 여성의 활동별 대응직종 및 시간당 평균임금

무급노동활동	시간사용코드	KSCO 코드	KSCO 설명	전체 여성 (won/hr)
가정관리				4,966
식사준비 및 설거지	411-412	512	가사 및 관련근로자	4,372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413	741	식품가공원	3,299
세탁 및 세탁물 널기	421	913	세탁원	3,429
옷정리	422	512	가사 및 관련근로자	4,372
다림질 및 의류수선	423-424	913	세탁원	3,429
재봉, 뜨개질	425	743	직조원	3,172
방, 물품정리	431	512	가사 및 관련근로자	4,372
집안청소 및 기타	432-433	914	건물관리인	3,701
가재도구, 집수리 서비스 받기	441	712	대목수	4,667
세차 및 집관리	442-443	914	건물관리인	3,701
시장보기 및 쇼핑하기	451-452	512	가사 및 관련근로자	4,372
내구재 구매관련 행동	453	341	구매대리인	8,002
가계부 정리	461	412	회계사무원	7,168
가정계획	462	131	종합관리자	9,862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463	412	계수사무원	7,168
기타 가사일	499-841	512	가사 및 관련근로자	4,372
가족보살피기				7,661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511-512, 519	233	초등교육교사	8,122
초·중·고등학생 돌보기	521-523, 529	233	초등교육교사	8,122
배우자 및 부모보살피기	530, 540, 550, 851	323	간호전문가	6,739
참여 및 봉사활동				5,412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	610	511	여객접대원	4,065
국가 및 지역행사 지원	641	511	여객접대원	4,065
자녀교육관련 봉사	642	233	초등교육교사	8,122
아동, 노인, 장애인관련	643	323	간호전문가	6,739
재해지역, 기타 자원봉사 및 이동	644, 649, 861	511	여객접대원	4,065

자료: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1993;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9년 원 자료 이용함.

〈표 4〉 전체 여성의 활동유형별·연령별 시간당 평균임금

시간사용 코드	KSCO 코드	무급노동활동	연령별 시간당 평균임금(원)					
			평균임금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정관리			4,966	5,515	5,202	5,357	5,746	4,259
411-412	512	식사준비 및 설거지	4,372	4,487	4,663	4,353	4,558	3,814
413	741	간식 및 저장식품 만들기	3,299	3,669	3,348	3,513	3,456	2,559
421	913	세탁 및 세탁물 널기	3,429	3,572	3,874	3,415	3,218	2,932
422	512	옷정리	4,372	4,487	4,663	4,353	4,558	3,814
423-424	913	다림질 및 의류수선	3,429	3,572	3,874	3,415	3,218	2,932
425	743	재봉, 뜨개질	3,172	3,365	3,539	3,281	2,997	2,573
431	512	방, 물품정리	4,372	4,487	4,663	4,353	4,558	3,814
432-433	914	집안청소 및 기타	3,701	3,548	2,930	4,380	4,204	3,752
441	712	가재도구, 집수리 서비스반기	4,667	4,792	6,262	3,454	3,234	4,838
442-443	914	세차 및 집관리	3,701	3,548	2,930	4,380	4,204	3,752
451-452	512	시장보기 및 쇼핑하기	4,372	4,487	4,663	4,353	4,558	3,814
453	341	내구재 구매관련 행동	8,002	6,312	9,135	11,223	12,331	2,457
461	412	가계부 정리	7,168	5,130	7,539	8,073	10,194	5,916
462	131	가정계획	9,862	7,170	8,944	10,742	11,895	11,439
463	412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7,168	5,130	7,539	8,073	10,194	5,916
499-841	512	기타 가사일	4,372	4,487	4,663	4,353	4,558	3,814
가족보살피기			7,661	5,718	7,260	9,392	9,332	7,327
511-512, 519	233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8,122	5,398	6,955	9,555	10,812	9,049
521-523, 529	233	초·중·고등학생 돌보기	8,122	5,398	6,955	9,555	10,812	9,049
530, 540, 550, 851	323	배우자 및 부모보살피기	6,739	6,358	7,869	9,066	6,371	3,884
무급가사노동			5,392	4,705	5,527	5,994	6,312	4,743
참여 및 봉사활동			5,412	4,856	5,821	5,868	5,682	5,859
610	51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돕기	4,065	3,362	4,262	3,799	4,023	4,838
641	511	국가 및 지역행사 지원	4,065	3,362	4,262	3,799	4,023	4,838
642	233	자녀교육관련 봉사	8,122	5,398	6,955	9,555	10,812	9,049
643	323	아동, 노인, 장애인관련	6,739	6,358	7,869	9,066	6,371	3,884
644, 649, 861	511	재해지역, 기타 자원봉사 및 이동	4,065	3,362	4,262	3,799	4,023	4,838
무급노동			5,396	4,635	5,526	5,996	6,216	4,899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9년 원자료 이용함.

〈표 5〉 전체 여성의 연령별 무급노동 참여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 계
여성수(천 명)	3,207	3,963	3,301	2,196	2,237	14,904
비율(%)	21.52	26.59	22.15	14.73	15.01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과한 14.7%로 가장 낮은 비중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 綜合代替費用法

종합대체비용법은 Goldschmidt-Clermont(1982)에 의하면, 여성의 무급노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직업인을 가계에서 고용한다는 전체에서 그 직업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활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직업의 선정에 있다.

기존 국내·외의 연구에서 주로 선택되는 대체직업은 시장조사된 가정부나 파출부의 시간당 평균임금, 또는 종합관리자 직종(KSCO코드 13에 해당)의 시간당 평균임금이었다. 이 경우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은 가정부나 파출부의 임금을 이용할 때, 여성의 무급노동가치가 과소추계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면 종합관리자를 대체직종으로 선정할 때에는 직종 자체의 임금수준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대추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양 방향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연구 중 Trewin(2000)은 1997년 호주의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여 해당되는 직종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임금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Tatau(2001)는 1999년 뉴질랜드의 생활시간자료를 가지고 성별·연령별 구분 없이 해당되는 직종의 전체 중위수임금(median wage)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숙재(2001)는 무급노동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가정부와 종합관리자 2인의 평균임금을 동시에 대체직종의 임금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으며, 김태홍(2001)은 성별의 격차로 인한 대응직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되는 직종의 전체 남성평균임금을 활용하기도 한다.

종합대체비용법(generalist replacement cost method: GRC)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하나의 가정관리직으로 간주하여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산업 전체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의 활동분류기준표에서 생산적인 무급노동에 해당되는 대체비용을 가정관리활동, 가족보살피기 활동,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을 대상으로 각 활동에 상응하는 연령별 평균임금(W_{Hj})을 활용하여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한다. 추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UWK_{GRC} = \sum_{j=1}^N H_j PK_j W_{Hj}$$

여기서, UWK_{GRC} : 무급노동에 대한 여성 대체비용 추정치
 H_j : j 여성(연령별)의 무급노동시간, 즉 $H_j = \sum_{i=1}^M H_{ij}$
 PK_j : j 여성(연령별)의 무급노동 참여수
 W_{Hj} : j 여성(연령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평균임금

위 식은 여성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H_j), 연령별 무급노동참여 여성수(PK_j) 및 연령별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당 평균임금(W_{Hj})을 사용하여 무급노동가치를 산출한다. 이 추계방법에서 기본변수인 연령별 여성 대체임금(W_{Hj})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여성 대체임금을 여성의 무급노동인 가정관리활동, 가족보살피기 활동 그리고 참여 및 봉사활동의 평균임금을 전체 여성의 총무급노동시간 대 활동유형별 무급노동시간비율을 가중치로써 사용하였다(중합대체비용법 I). 이 방법을 활용하면, 단순히 전체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때보다 활동별 시간투입량의 차이를 시간배분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시간당 생산성을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둘째, 이전 연구와 같이 가사 및 관련근로자를 대체직종의 근로자로 전제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기준 코드 512, 즉 ‘가사 및 관련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전체 여성의 중합대체임금으로 사용하였다(중합대체비용법 II). 이 방법은 이전 방법과 동일하게 추계함으로써 추계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에서 이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중합대체비용법 I에 의해 연령별 여성무급노동 대체비용은 50대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6,46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40대, 30대, 60대 이상, 20대 4,752원의 순으로 최고금액

<표 6> 전체 여성의 연령별 시간당 중합대체비용 I, II

(단위: 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대체비용
중합대체비용 I(W_{Hj})*	4,752.3	5,615.6	6,168.3	6,460.3	4,886.0	5,576.5
중합대체비용 II(512 직종)	4,487.1	4,663.5	4,352.9	4,558.1	3,814.1	4,375.2

주: *는 연령별 대체비용을 연령별 실제여성인구의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추정함.

과 약 1,700원의 편차가 존재한다. 종합대체비용법 II에서는 연령별 시간당 임금이 30대가 4,663원으로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연령계층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 금액은 종합대체비용법 I에 비해 전연령계층에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간접적으로 종합대체비용 II의 대응직종임금은 타직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機會費用法

1) 總機會費用法

총기회비용법은 무급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이 취업할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implicit income)을 무급노동가치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합리적인 사람이 무급노동에 시간을 배분할 때, 시간당 무급노동의 한계가치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률과 같은 점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여성의 시장임금률이 무급노동의 한계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면, 시장임금률에 무급노동시간을 곱해 주면 무급노동의 총가치뿐만 아니라 무급노동의 잠재적인 가치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Hefferan(1982)은 가게에서 여성의 1일 무급노동가치는 시장에서의 1일 유급노동가치와 같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분석틀이 가장 정교하지만, 동일한 가정환경적 조건과 동일한 무급노동시간조건에서도 학력수준, 기술수준 등과 같은 개인의 인적 특성에 따른 임금차이로 인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이 ‘집에 있는 것(be home)’의 가치가 잠재적인 시장소득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간주할 경우에 이 때 집에 있는 것의 가치는 단순히 가사서비스만의 개념이 아니라, 여성의 총가치를 말하는 것이 된다. 이를 종합대체비용법과 비교하게 되면 Hawrylyshyn(1976)은 기회비용법으로 추계한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는 상대적으로 과대추계되는 경향이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추계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총기회비용법(gross opportunity cost method: GOC)은 여성이 무급노동을 하기 위하여 유급노동을 포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한계임금률과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추계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WK_{GOC} = \sum_{j=1}^N H_j PK_j W_{GOCj}$$

여기서, UWK_{GOC} : 무급노동에 대한 총기회비용 추정치
 H_j : j 여성(연령별)의 무급노동시간
 PK_j : j 여성(연령별)의 무급노동 참여수
 W_{GOCj} : j 여성(연령별 데모그래픽)의 평균총기회비용

대부분의 이전 연구에서 실제로 총기회비용은 무급노동에 대한 총시간소비를 연령별 전체 평균시장임금률에 곱해서 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기회비용법은 노동시장구조, 고용지위(employment status), 심리적 소득(psychic income), 개별노동자에 대한 시장임금률의 적합성에 따른 상이한 가치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좀더 보완하기 위하여, 연령별로 해당 여성인구수를 분류하여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여 연령에 따른 시간당 한계생산성 차이를 기회비용 추정치에 투영하려고 시도하였다. 연령별 시간당 총기회비용은 <표 7>에서와 같이 30대가 6,333.1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20대 5,086.3원, 40대 4889.3원, 60대 이상 4516.5원, 50대는 4,252.2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별 시간당 총기회비용이 가사 및 관련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사용한 종합대체비용 II보다 높았다. 그러나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 평균임금법을 기초로 한 종합대체비용 I보다는 시간당 총기회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2) 純機會費用法

Nordhaus and Tobin(1972)은 전통적인 GNP추계를 수정하려는 시도에서 가계에서 생산된 서비스가치를 기회비용법으로 추계하는 연구를 발전시켜 보다 개선된 복지개념인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를 도입했다. 또한 Murphy(1982)는 적용하는 임금에 세금공제, 특히 노동관련 비용(교통비, 의복비 등)을 공제한 순(net)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정확한 기회비용법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점으로서 비자발적 실업자나 임금에

<표 7> 전체 여성의 연령별 시간당 기회비용

(단위: 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기회비용	5,086.3	6,333.1	4,889.3	4,252.2	4,516.5
소득세	10.6	19.5	25.9	8.1	12.1
순기회비용	5,075.7	6,313.6	4,863.4	4,244.1	4,504.4

주: 소득세 = 연령별 평균소득세 ÷ 365 ÷ 연령별 1일 근무시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9년 원자료 이용함.

포함되지 않는 비금전적 급부문제 등을 Murphy(1982)가 지적하고 있지만, 이 방법은 무급노동자의 개인적 특성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는 데 따른 이점이 있다.

이를 추계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순기회비용법(net opportunity cost method: NOC)은 여성이 유급노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순기회비용으로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한다. 순기회비용은 총기회비용에서 세금과 노동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임금소득에 해당되며, 그 추계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UWK_{NOC} = \sum_{j=1}^N H_j PK_j W_{NOCj}$$

여기서, UWK_{NOC} : 무급노동에 대한 순기회비용추정치

H_j : j 여성(연령별)의 무급노동시간

PK_j : j 여성(연령별)의 무급노동 참여수

W_{NOCj} : j 여성(연령별 데모그래픽)의 평균순기회비용

그러나 순기회비용의 추계시 기본자료인 세금과 노동관련 비용의 정확한 데이터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순기회비용법에 의한 여성의 무급노동가치 추계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 원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도시여성근로자들의 평균소득세를 추계한 후, 이를 총기회비용에서 제외시켜 순기회비용으로서 활용하였다. <표 7>과 같이 순기회비용법에 의한 무급노동가치 추계방법은 총기회비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총기회비용 대신에 순기회비용을 사용하게 된다. 전체 연령계층 중에서도 30대 연령계층은 세부담뭉이 40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높게 평가되고 있다. 평균소득세 크기는 40대의 부담뭉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30대, 60대 이상, 20대 그리고 50대 연령계층의 순으로서 부담뭉이 가장 큰 40대와 부담뭉이 가장 낮은 50대를 비교하면, 그 편차는 약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소득세액의 크기를 반영하면, 구체적으로 연령별 총기회비용에서 연령별 평균소득세를 감산한 시간당 순기회비용의 크기로 나타난다. 시간당 순기회비용 역시 전체 연령계층 중에서도 30대가 6,313.6원으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 20대, 40대, 60대 이상, 50대의 순이었다.

(3) 統合費用法

통합비용법(integrated cost method: IC)은 여성의 무급노동가치가 개별기능대체비용법, 종합대체비용법 I·II, 총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으로 추계할 경우, 특히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다른 어떤 추계방법보다 직종별로 세부적인 임금자료가 추계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은 개별활동별·기능별로 대응되는 직종의 소분류 임금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히 매치·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계가치가 실제치보다 高評價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종합대체비용법 I은 활동별·기능별로 분류한 시간량에 전체 무급노동에 사용하는 시간량의 비중을 가중치로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종합대체비용법 II처럼 가사 및 관련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성무급노동가치에 대한 低評價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종합대체비용법 II는 대응되는 단일직종의 임금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간편성은 있지만, 역시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추계방법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총기회비용법은 현재 무급노동자로서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진출을 하여 유급노동자로 전환될 경우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전직종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추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합성이란 장점은 있으나, 이 추계방법 역시 여성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반영하는 데는 부분적으로 한계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여성인적 특성의 차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한 순기회비용법은 조세관련 데이터수집의 한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역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각 추계방법의 장·단점을 보완 및 개선한 통합비용법 I을 본 연구에서의 무급노동가치 추계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통합비용법 I은 위의 네 가지 추계방법(개별기능대체비용법, 종합대체비용법 I, 총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에 의하여 추계된 무급노동가치의 과대평가(over-estimated) 또는 과소평가(under-estimated)로 인한 추계치의 편차를 낮추기 위하여 각 추계방법에 사용된 평균임금이 각 추계방법별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추계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통합비용법 II는 통합비용법 I과 동일한 분석방법틀을 적용하여 다음 추계방법(개별기능대체비용법, 종합대체비용법 II, 총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을 활용하게 되며, 통합비용법 I의 추계결과와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표 8〉 전체 여성의 임금가중치 I·II

	개별기능대체비용	종합대체비용	총기회비용	순기회비용
가중치 I	0.2591	0.2649	0.2382	0.2376
가중치 II	0.2734	0.2244	0.2514	0.2506

주: 방법별 전체 시간 대비 활동별 사용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가중치임.

$$UWK_{IC} = \sum_{k=1}^4 \omega_k \cdot UW_k$$

여기서, ω_k : 각 추정방법별 임금가중치($\omega_1 + \omega_2 + \omega_3 + \omega_4 = 1$)

따라서 통합비용법은 기존의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한계점을 보완시켜 추계치의 객관성과 정밀도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추계한 무급노동의 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추계하되 각 추계방법에서 사용한 평균임금률의 상대적 비중을 가중치로 활용한 점에 반영되어 있다. 임금가중치 I은 종합대체비용을 여성의 무급노동 평균임금법인 종합대체비용법 I에 의하여 추계된 시간당 평균임금을, 임금가중치 II는 종합대체비용을 시간당 가사평균임금법인 종합대체비용법 II를 적용한 결과이다(〈표 8〉 참조). 각 방법에 따른 임금가중치는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 의한 가중치가 비교적 높았으며, 가중치 편차는 0.01~0.05로 상대적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方法別 推計結果

방법별로 추계한 전체 여성무급노동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9〉에서처럼 시장대체비용법 중에서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의 연간 총추계액 113조 6,000억 원, 종합대체비용법 I 133조 7,000억 원, 종합대체비용법 II 105조 2,000억 원이었으며, 기회비용법 중에서 총기회비용법은 124조 7,000억 원으로 추계되었고, 순기회비용법은 124조 원이었다. 다섯 가지 방법을 활용한 통합비용법 I은 124조 1,000억 원, 통합비용법 II는 117조 1,000억 원으로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가 추계되었다. 전체 여성 1인당 연간 무급노동가치는 추계방법에 따라 762만 원에서 897만 원으로 추계되었고, 통합비용법 I·II에 의하여 추계한 결과는 각각 832만 원, 786만 원이었다. 또한 전체 여성무급노동의 1인당 연간 추계액을 12개월로 나눈 1인당 월추계액은 방법별로 63만 5,000원에서 74만 7,000원으로 추계되었고, 통합비용법 I·II에 의한 월추계액은 각각 69만 3,000

〈표 9〉 방법별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 종합결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 체
개별기능 대체 비용법	총추계액 (10억 원)	17,239.73 (13.15)	41,282.05 (33.72)	25,897.66 (24.94)	17,283.61 (17.36)	11,919.78 (10.83)	113,622.84 (100.00)
	1인당 추계액(원)	5,375,657	10,416,869	7,845,399	7,870,497	5,328,468	7,675,145
	GDP 대비	3.57%	8.55%	5.36%	3.58%	2.47%	23.53%
종합대체 비용법 I	총추계액 (13.15)	17,591.04 (13.15)	45,095.53 (33.72)	33,356.46 (24.94)	23,217.01 (17.36)	14,488.76 (10.83)	133,748.80 (100.00)
	1인당 추계액	5,485,202	11,379,139	10,104,956	10,572,409	6,476,872	8,974,020
	GDP 대비	3.65%	9.34%	6.91%	4.81%	3.00%	27.71%
종합대체 비용법 II	총추계액 (15.78)	16,609.52 (15.78)	37,449.60 (35.57)	23,539.33 (22.35)	16,380.92 (15.56)	11,310.29 (10.49)	105,289.66 (100.00)
	1인당 추계액	5,179,146	9,449,812	7,130,968	7,459,435	5,056,008	7,623,647
	GDP 대비	3.44%	7.76%	4.88%	3.39%	2.34%	21.81%
총기회 비용법	총추계액 (15.09)	18,827.37 (15.09)	50,857.53 (40.75)	26,440.03 (21.18)	15,281.57 (12.25)	13,393.07 (10.73)	124,799.58 (100.00)
	1인당 추계액	5,870,711	12,833,090	8,009,703	6,958,822	5,987,067	8,373,563
	GDP 대비	3.90%	10.54%	5.48%	3.17%	2.77%	25.85%
순기회 비용법	총추계액 (15.09)	18,728.58 (15.09)	50,633.11 (40.81)	26,177.88 (21.10)	15,226.77 (12.27)	13,313.21 (10.73)	124,079.55 (100.00)
	1인당 추계액	5,839,907	12,776,460	7,930,289	6,933,866	5,951,366	8,325,252
	GDP 대비	3.88%	10.49%	5.42%	3.15%	2.76%	25.70%
통합 비용법 I	총추계액 (14.56)	18,064.90 (14.56)	46,796.10 (37.71)	28,069.72 (22.62)	17,889.89 (14.41)	13,282.60 (10.70)	124,103.21 (100.00)
	1인당 추계액	5,632,959	11,808,250	8,503,399	8,146,581	5,937,686	8,326,839
	GDP 대비	3.74%	9.69%	5.81%	3.71%	2.75%	25.70%
통합 비용법 II	총추계액 (15.25)	17,870.66 (15.25)	45,173.41 (38.55)	25,574.88 (21.82)	16,062.00 (13.71)	12,502.69 (10.67)	117,183.65 (100.00)
	1인당 추계액	5,572,393	11,398,791	7,747,616	7,314,209	5,589,044	7,862,564
	GDP 대비	3.70%	9.36%	5.29%	3.33%	2.59%	24.27%

원, 65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합대체비용법 I 27.7%, 총기회비용법 25.8%의 순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대체비용법 II는 약 21.8%로 가장 낮았다. 방법별로 추계된 전체 여성의 GDP 대비 비중은 통합비용법 I 25.7%, 통합비용법 II 24.3%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각 방법의 추계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가 GDP에서 21.8~27.7%의 범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1999년 우리 나라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는 GDP에서 약 26%(통합비용법 I)를 차지하는 124조 원이었다. 이에 상응하는 전체 여성 1인당 연간 무급노동가치는 약 832만 원, 월무급노동가치는 69만 3,000원에 해당된다.

연령계층별로는 30대의 총추계액은 46조 7,000억 원과 1인당 연간 추계액은 1,180만 원이었다. 20대와 50대의 총추계액은 각각 18조 원과 17조 8,000억 원으로 비슷하게 추계되었지만, 50대가 250만 원 정도 많은 814만 원이었다. 또한 총추계액의 GDP 대비 비중도 30대가 9.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5.81%, 20대와 50대는 3.74%, 3.71%로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추계방법인 개별기능대체비용법, 종합대체비용법 I·II, 총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 통합비용법 II에서도 30대 연령계층의 GDP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 나라 전체 여성의 총무급노동가치에 대한 연령별 기여도는 모든 추계방법에서 30대 연령계층이 가장 두드러진다.

3. 國內·外 研究와의 比較分析

앞에서의 방법별 추계결과를 최근 이루어진 연구에 제한하여 비교하면, 개별적인 소표본에 의해 연구되어 온 이전 연구는 비교대상에서 제외된다. 1999년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만을 비교대상으로 하므로 이 분야의 최근 연구인 김태홍(2001)이 추계한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추계액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김태홍(2001)⁴⁾은 전통적인 무급노동가치 추계방법인 기회비용법과 시장대체비용법 중에서는 개별기능대체비용법과 종합대체비용법을 활용하여 10세 이상 전체 여성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추계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

4) 김태홍(2001)의 연구에서는 무급노동의 범주에 무급노동을 위해 소요되는 이동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로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기회비용법에서는 연령계층별, 연령·학력별 및 여성 무급노동가치 추계에 전체 남성임금을 적용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체 여성무급노동가치에 전체 여성임금을 적용하게 될 경우 시장노동에서의 성별 임금격차가 그대로 무급노동가치 추계에 반영되어 여성무급노동가치의 추계치가 과소평가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기회비용법의 이론적 배경은 여성이 가게에서의 무급노동에 종사함으로써 상실된 소득개념으로 추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유급노동에서 전체 여성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령 및 학력별 구분도 이미 기회비용법 기본정의에 전학력, 전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체 여성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므로 문제는 없으나, 기회비용법의 한계로 지적되는 여성 개인별 특성이 추계치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연령계층별, 연령·학력별로 구분하여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을 추계할 필요성도 있겠다.

여기서는 동일한 추계방법을 대상으로만 비교하면, <표 10>에서와 같이 추계방법별 1인당 월추계액가치는 총기회비용법에 의한 추계치는 53만 3,000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9만 8,000원으로 16만 5,000원 더 높게 추계되었다. 개별기능대체비용법에서는 활동별·기능별 분류에 대응되는 세부직종의 범주는 유사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의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추계한 점과 아울러 연령계층별로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기 때문에 추계치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종합대체비용법 II에서도 동일한 직종의 임금(KSCO코드 512)으로 추계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세분하여 동일직종의 평균임금을 매치하므로 추계치의 편차가 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추계치가 높았으나, 방법별 크기의 추이는 총기회비용법, 개별기능대체비용법, 종합대체비용법 II의 순으로 김태홍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 여성의 경우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의 1인당 월무급노동추계액은 김태홍의 연구결과 43만 2,000원, 본 연구는 63

<표 10> 최근연구와의 1인당 월무급노동가치 비교

(단위: 원)

추계방법 연구자	개별기능대체비용법	종합대체비용법 II	총기회비용법
김태홍(2001)	432,000	430,000	533,000
본 연구(2001)	639,595	635,304	697,797

주: 종합대체비용법 II는 가사 및 관련 여성근로자 임금을 사용한 방법임.

만 9,000원으로 20만 7,000원 높았으며, 종합대체비용법Ⅱ에서도 전자의 연구결과 43만 원에 비해 본 연구결과 20만 5,000원 더 많은 63만 5,000원이었다.

따라서 최근연구와 추계방법별로 비교한 결과, 총기회비용법에 의한 가치(69만 7,000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별기능대체비용법(63만 9,000원), 종합대체비용법Ⅱ(63만 5,000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추계방법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때에는 종합대체비용법Ⅰ, 통합비용법Ⅰ, 총기회비용법의 순이 된다. 이러한 결과를 1999년 기준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73만 3,106원과 전체 직종 여성근로자의 임금 86만 6,570원과 비교해 볼 때는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는 어떠한 추계방법으로도 전부 낮게 추계되었다. 본 연구가 이전 연구에 비해 추계한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에는 전체 여성의 참여 및 봉사활동의 가치(약 1% 이내)를 포함하고 있고, 기준연령 대상도 상이하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전 연구를 좀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추계방법에 의해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 근거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질과 량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체 여성의 생활시간 조사의 표본분류 규모차이와 아울러 연령별·활동별 시간참여비율 및 대응되는 직종의 임금 등을 반영한 임금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추계방법보다 한 단계 진전된 방법에 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전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순기회비용법과 통합비용법에 의한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의 범주확대로 이전의 무급노동가치를 추계하는데 연구범주가 무급가사노동(또는 가사노동)에만 한정되어 추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좀더 나아가 가계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두어 가계 외에서 이루어진 참여 및 봉사활동을 포함한 무급노동개념으로 확대분류하여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에 대한 추계방법 및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요 선진국가의 사례와 비교하면, 일본은 <표 11>과 같이 1996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무급노동가치는 총기회비용법으로 추계한 무급노동가치 추계액의 GDP비중이 23%로 가장 높았고, 종합대체비용법Ⅱ에 의한 무급노동가치 GDP비중이 15%로 가장 낮았다. 이에 반해 한국의 20세 이상 남녀의 전체 무급노동가치 추계액의 GDP 대비 비중은 총기회비용법에 의한 GDP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대체비용법Ⅱ에 의한 GDP비중이 27%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추이는 일본과 동일하였지만, 비중면에서는 8~12% 정도 높게 추계되었다. 그 이유는 Oda K. and Sato R.(1997) 등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일본의 유급노동에 대한 무급노동시간을 들고 있다. 이 밖의 이유로

〈표 11〉 무급노동가치의 국제적 비교

국 가	저 자	범주	기준연도	GDP 비중
개별기능대체비용법				
호 주	통계청	UW	1997	48
스 위 스	Sousa-Poza/Widmer/Schmid	UW	1997	52
캐 나 다	Sousa-Poza/Widmer/Schmid	UW	1992	43
독 일	연방통계청	UW	1992	71
뉴 질 랜드	통계부	UW	1990-1991*	52
일 본	경제기획청	UW	1996	20
한 국	본 연구	UW	1999	28
종합대체비용법 II				
호 주	통계청	UW	1997	43
스 위 스	Sousa-Poza/Widmer/Schmid	UW	1997	41
캐 나 다	통계청	UW	1992	34
독 일	연방통계청	UW	1992	67
뉴 질 랜드	통계부	UW	1990-1991	43
			1999	39
영 국	Short. S	UW	1999	44
스 웨 덴	통계청	UHW	1999	45(GNP)
핀 란 드	통계청	UW	1990	45
일 본	경제기획청	UW	1996	15
한 국	본 연구	UW	1999	27
총기회비용법				
호 주	통계청	UW	1997	60
스 위 스	Sousa-Poza/Widmer/Schmid	UW	1997	49
캐 나 다	Sousa-Poza/Widmer/Schmid	UW	1992	54
뉴 질 랜드	통계부	UW	1990-1991	68
독 일	연방통계청	UW	1990-1991	71
일 본	경제기획청	UW	1996	23
한 국	본 연구	UW	1999	31
순기회비용법				
호 주	통계청	UW	1997	48
스 위 스	Sousa-Poza/Widmer/Schmid	UW	1997	38
캐 나 다	통계청	UHW	1992	32
독 일	Schetkatt	UHW	1990	29(GNP)
한 국	본 연구	UW	1999	31

주: UHW는 무급가사노동, UW는 무급노동, *는 12세 이상 인구.

자료: Dennis Trewin(2000)에서 재구성함.

무급노동범주에 ‘이동’, ‘주택관리 및 정원관리’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과 외국의 무급노동 조사대상 기준연령이 일반적으로 16세 이상인 데 비해, 일본은 15세 이상인 것에도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의 총추계치의 차이도 일본의 임금수준이 우리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계대상인구, 무급노동시간비율, 무급노동범주 및 적용추계기법 등의 세부적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통계국의 Dennis Trewin(2000)은 1997년 호주 생활시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무급노동⁵⁾가치를 전국·지역별로 분류하여 기존의 추계방법에 순기회비용법을 추가하여 추계하였다. 특히 각각의 추계방법에 남성·여성의 임금률뿐만 아니라 각 범주에 해당하는 남성·여성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무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가치를 분리적으로 추계하였는데, 그 결과 개별적 남성·여성임금으로 추계하였을 경우보다 남성·여성의 가중평균임금률로 추계된 가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GDP 대비 비중은 방법별로 총기회비용법이 60%, 순기회비용법 및 개별기능대체비용법이 48%, 종합대체비용법이 43%를 차지하였는데, 우리 나라와는 다르게 총기회비용법에 의한 추계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호주에서는 무급가사노동범주에 속하는 ‘집관리 및 정원관리’에 매치되는 시장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며, 이 활동에 대한 시간소비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긴 것이 주요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요 선진국의 무급(가사)노동가치의 GDP 대비 비중은 추계방법에 사용된 노동력 참여율과 상대임금률의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생활시간조사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뉴질랜드는 1999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추계된 GDP기여도는 종합대체비용법Ⅱ에 의해서는 39%, 캐나다는 1992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방법별로는 32~54%, 그 밖의 국가(독일 12세 이상 전체 인구, 스위스 14세 이상 전체 인구)에서는 대상기간과 대상연령의 차이는 있었지만 최소 31%에서 최대 71%까지 차지한 국가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마다 다른 경제적·사회적·문화적·기후적인 요소의 차이에 따라 무급노동가치를 결정짓는 무급노동

5) 음식준비, 청소, 세탁, 기타 가사일, 정원관리, 가정관리, 아이보살피기 및 구매관련 행동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한 이동시간이 포함된다. 무급노동에는 이 밖에 자원봉사 및 지역 활동이 포함된다.

시간, 대응되는 임금, 참여인구수 및 추계방법 등에 의해 GDP에 미치는 정도의 차이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4. 無給勞動價値의 決定要因

우리 경제에서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22~28%로서 전체 남녀 대비 29~36%⁶⁾ 중 90% 이상을 전체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GDP비중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항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무급노동가치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무급노동가치를 결정하는 인자가 무엇인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향후 무급노동가치의 발전추이를 진단하는 기본자료의 활용도 차원에서 유의미하다.

우선 여성의 무급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계특성(주거전용면적, 가계구성원수 등), 인적 특성요소(여성의 교육수준, 연령, 미취학아이들의 수 등)들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앞에서 살펴본 일곱 가지 추계방법에 의하여 각각 추계된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찾아보았다. 회귀방정식은 이 요소들 이외에도 농가, 비농가, 입주형태, 지역별(서울, 지방) 등의 활용가능한 변수 전부를 차례로 기초회귀분석 단계에서 검정하여 적합한 요인을 식별하였으나,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대부분이 통계적 의미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다음 회귀방정식의 구조모형이 전체 여성무급노동가치의 요인을 결정하는 데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UWK_k = a_1 Educ_t + a_2 Age_t + a_3 Child_t + a_4 Area_t + e_t$$

여기서, UWK_k : 추계방법 k 에 의한 여성의 무급노동가치

$Educ$: 교육기간

Age : 여성의 연령

$Child$: 미취학아이들의 수

$Area$: 주거전용면적

t : 1999

위의 방정식에 사용된 데이터의 특성은 $Educ$ 변수의 경우, 실제자료에는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숫자적 범주구분만 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6) 권태희(2001) 참조함.

〈표 12〉 전체 여성무급노동가치의 결정요인

	개별기능 대체비용법	종합대체비용법		총기회 비용법	순기회 비용법	통합비용법	
		I	II			I	II
교육기간	633,542 (74.21)	664,152 (75.23)	580,219 (82.65)	740,391 (85.63)	737,987 (85.43)	691,931 (81.46)	674,619 (83.07)
연 령	70,550 (34.75)	91,271 (43.47)	65,883 (39.46)	73,344 (35.67)	72,892 (35.48)	77,262 (38.25)	70,792 (36.65)
미취학 아이들수	3,303,294 (20.90)	2,454,985 (15.02)	2,426,242 (18.67)	3,635,793 (22.72)	3,633,791 (22.72)	3,236,293 (20.58)	3,272,864 (21.77)
주거전용 면적	4,350 (0.77)	20,043 (3.41)	4,854 (1.04)	-10,142 (-1.76)	-10,188 (-1.77)	1,600 (0.28)	-2,825 (-0.52)
R^2	0.69	0.73	0.73	0.72	0.72	0.72	0.72

주: () 안의 값은 t 값.

위해 전체 교육기간을 반영한 데이터로 전환하였다. 미취학아이들의 수(Child)에 관한 자료는 실제조사되지 않았지만, 원자료의 설문지 문항을 활용하여 각 가계들의 미취학아이들의 수를 연산하여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분석데이터로 변환·적용하였다. 원자료에는 실제로 더미처럼 일정 자료에 대한 범위의 값만 가지므로 회귀분석을 통한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결정하는 의미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통계학적인 처치이다.

분석결과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표 12〉과 같이 교육기간이 길수록,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미취학아이들의 수가 많을수록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높인다는 데에는 모든 추계방법에서 추계된 무급노동가치에 대해 공통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주거전용면적이 넓을수록 총기회비용법, 순기회비용법, 통합비용법 II에 의한 추계결과는 오히려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계방법과 상관없이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는 교육기간, 연령, 미취학아이들의 수에는 陽(+)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공통인자로 설명할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변수는 추계방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낮았지만 陰(-)의 계수값을 가짐으로써 주거전용면적이 넓고, 좁음에 따라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도출된다. 본 연구의 핵심추계방법인 통합비용법 I에 의한 결과는 여타 방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기간, 미취학아이들의 수에 따라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 증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설명된다.

IV. 研究結果 및 示唆點

본 연구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기초로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기존의 시장대체비용법과 기회비용법에 의하여 추계하고, 이 추계 방법들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방법을 가중평균한 통합비용법을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특히 무급노동가치 추계방법에서 이전 연구와의 차이점은 ① 무급노동의 활동유형별로 세분화된 임금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 ② 각 추계방법에 의하여 추계된 무급노동가치를 통합비용법 I로 발전시켜 표준화된 무급노동추계방법에 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 특히 본 연구에서 추계된 연령별 무급노동의 가치는 연령별 인구분포비율로서 가중평균한 결과이므로 무급노동가치 추계에서 연령별 인구분포에 따른 특성을 추계치에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결과는 추계방법에 따라서 다소 편차는 있었으나,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의 연간 총추계액은 약 105조 2,000억~133조 7,000억 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중에서 무급노동가치에 대한 총추계액이 가장 높게 추계된 방법은 종합대체비용법 I이었으며, 가장 낮게 추계된 방법은 종합대체비용법 II였다. 무급노동가치의 총추계액의 경상 GDP 대비(1999년 기준) 비율은 약 22~28%를 차지하였으며, 월 1인당 추계액은 최소 63만 원에서 최대 89만 원이었다. 연령별 분포로 비교하면, 모든 추계방법에서 30대 여성의 월추계액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계층은 60대 이상 여성계층이었다. 또한 20대, 30대 여성을 포함한 연간 무급노동가치의 총추계액 구성비는 전체 연령계층 대비 약 6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에 대한 주요 기여는 20~30대 여성들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전 연구와의 비교측면에서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추계되었다. 그러한 이유는 전체 여성의 생활시간조사상 표본규모의 차이와 함께 연령별·활동별로 상응하는 보다 미시적인 임금자료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동별 시간사용량에 대한 비중을 가중치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추계결과와는 추계방법의 객관도와 정교한 접근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전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순기회비용법과 통합비용법 I에 의한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에 대한 추계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비교연도와 세밀한 추계방법, 추계대상 범주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체

여성의 무급노동가치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많은 제약요인이 있었지만, 1999년 우리 나라 무급노동의 총추계액의 GDP 대비율은 1996년 기준 일본의 15세 이상 전체 여성 무급노동의 GDP 대비 14~20%보다 약 8% 정도 높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추계된 전체 여성무급노동가치의 추계액은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활용성을 가진다. 예컨대,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문제, 혼인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및 사회보험문제 등에 적용 및 반영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체 여성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과소보상체계에 있으므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제도적 영역에서 전체 여성들을 위한 합당한 보상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상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만 하는데, 어느 경제주체보다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무급노동가치 추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무급노동가치를 사회일반에게 고시해야 한다. 장차 제도적 장치로 적극 반영된다면, 기존의 과소보상되었던 전체 여성들의 무급노동에 대한 추계치를 현실화하여 사회보험·私保險 및 조세제도 측면의 공정한 법률적인 배상기준으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겠다.

앞으로 무급노동가치는 유급노동가치 못지않게 추계기법과 추계에 필요한 기본자료가 정규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급노동가치가 무급노동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급노동의 外部效果에 의한 移轉價值(transfer values)가 유급노동가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경제적 가치를 추계하는 데 무급노동가치가 경시된다면, 경제주체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계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도는 다른 경제주체, 즉 기업과 정부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급노동가치 추계에 관한 연구는 다른 어떠한 연구분야보다도 경제학분야에서 보다 과학적으로 定置하게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연구 과제이면서 여성무급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분석에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권태희, 「가계생산의 경제적 가치추계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준영,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 추계,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및 제도적 반영」, 『1999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 사업보고서』, 통계청, 2001. 10, 1~95.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2000. 12, 1999년 원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1~2000.
- _____, 『한국표준직업분류』, 1993. 1.
- _____, 『도시가계연보』 원자료, 2000. 1.
- _____,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제1권, 제2권 원자료, 2000. 12.
- 한국여성개발원·UNDP·여성부, 『여성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와 정책방안』, 2001.
- Arboleda, Heidi, “Valuation of Unpaid Work in Household Production and Volunteer,” UN ESCAP, 1999.
- Becker, Gary,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Vol. 75, 493~517.
- Fitzgerald, John M., Matthew S. Swenson, and John H. Wicks, “Valuation of Household Production at Market Prices and Estimation of Production Function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2, No. 2, 1996, 165~180.
- Fukami, Masahito, “Monetary Valuation of Unpaid Work in 1996 -Japan-,” International Seminar on Time Use Studies, UNDP and ESCAP, 7-10. December 1999.
- Goldschmidt-Clermont, L., “Unpaid Work in the Household,” ILO, Geneva, 1982.
- Hawrylyshyn, O., “The Value of Household Services: A Survey of Empirical Estimat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2, No. 2, 1976, 101~131.
- Hefferan, C., “What is a Homemaker’s Job Worth?: Too Many Answer,” *Journal of Home Economics*, 1982.
- Katsuki, O., S. Setsuko, I. Masanori, and K. Hideki, “Monetary Valuation of Unpaid Work,” KWDI, Workshop on Integrating Paid and Unpaid Work into National Polices, 1997, 344~369.
- Macredie, Ian and Sewell Dale, “Statistics Canada’s Measurement and Valuation of Unpaid Work,” *Canadian Observer*, October 28, 1998.

- Masahito, Fukami, “1996の無償労働の貨幣評價,” 經濟企劃廳 經濟研究所, 國民經濟計算部, 1998. 11.
- Murphy, M., “Comparative Estimates of the Value of Household Work in the United States for 1976,”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28, No. 1, 1982, 29~43.
- Nordhaus W. and J. Tobin, “Is Growth Obsolete?,” in *Economic Growth 15th Anniversary Colloquim*, NBER, New York.
- Reid, M.,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34.
- Sousa-Posa, Alfonso, Rolf, Widmer, and Hans Schmid, “Assigning Monetary Values to Unpaid Labour Using Input-Based Approaches: The Swiss Case,” Helsinki,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August 1999.
- Statistics Canada, “Statistics Canada’s Measurement and Valuation of Unpaid Work,” Working Paper, October 1998.
- Swiebel, Joke, “Unpaid Work and Policy-Making: Towards a Broader Perspective of Work and Employment,” UN ST/ESA/DESA DP.4, Feb. 1999.
- Tatau, Te Tari, “Mesuring Unpaid Work in New Zealand,” Working Paper, May 2001, Statistics New Zealand.
- Trewin, Dennis, “Unpaid Work and the Australian Economy 1997,” Working Paper,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October 2000.

[Abstract]

Measuring Monetary Valuation of Unpaid Work in Korea

Tae Hee Kwon

Demand for quantifying households' non-market production has been in both growing support and growing acceptance. This has brought about renewed interest in, and need for, appropriate valuation approaches. Under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unpaid work of household was not measured so far.

This paper on the basis of the Time Use Survey in 1999 made by National Statistics Office (NSO) is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productive activities in private households (like housework, food preparation, household upkeep, cleaning, construction and repairs, shopping and services, household management, child care, adult care and volunteer services). We will use variant methods of estimating unpaid work, and then integrate the estimated results of each method. Here we will take 4 types of methods, individual function replacement cost method, generalist replacement cost method, gross opportunity cost method, net opportunity cost method.

According to our results women's share in the "Enlarged GDP" ranges between 21.8 and 27.7% but men's share between 4.9 and 5.4%. Further, this work contributes to identifying key components of household production in Korean economy. Our estimation of non-market production is to be comparable to it in other countries and to be reexamined into the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Keywords: unpaid work, household production, integrated cost method, enlarged GDP

JEL Classification: E0, J2, J3